변경 대비표

□ **대상 펀드명:**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(H) [주식]

□ **변경 사항:**

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
(2)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(3등급→**2등급**)

(3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 예정일:** 2019년 1월 11일

□ **변경 내용:**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정 정 전</th><th>정 정 후</th></tr>
<tr><td>요약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Ⅱ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
[1]. 투자전략

[2].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</td><td>4. 운용전문인력
(생략)
5. 투자실적 추이
(생략)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
<table><tr><th>표준편차</th><th>투자위험등급</th></tr><tr><td>14.59%</td><td>3 등급 (다소높은위험)</td></tr></table></td><td>4. 운용전문인력
<u>업데이트</u>
5. 투자실적 추이
<u>업데이트</u>
2. 투자위험 등급 분류
<table><tr><th>표준편차</th><th>투자위험등급</th></tr><tr><td><u>15.33%</u></td><td><u>2 등급 (높은위험)</u>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
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td><td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<table><tr><th>표준편차</th><th>투자위험등급</th></tr><tr><td>14.59%</td><td>3 등급 (다소높은위험)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(생략)

나. 과세
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td><td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<table><tr><th>표준편차</th><th>투자위험등급</th></tr><tr><td><u>15.33%</u></td><td><u>2 등급 (높은위험)</u></td></tr></table>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u>업데이트</u>

나. 과세
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
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td></tr>
</table>

	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	**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** **분리과세한도 :**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 **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** **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** **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**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**업데이트**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**업데이트**		

트러스톤자산운용㈜